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건의안

(박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0
----------	------

제안일자 : 2019. 09. 09.
제안자 : 박현철 의원, 방세환 의원,
박상영 의원, 동희영 의원,
현자섭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주임록 의원,
황소제 의원, 임일혁 의원 (10인)

1. 제안이유

-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되어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개정해 줄 것을 촉구·건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102조 제2항 중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사무직원의 임면권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함. (수정안 제102조제2항)
- 지방의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시·도단위로 인사운영 협의회를 두고, 인사운영협의회에 해당 시·도의 관내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이 참여하도록 함. (수정안 제102조의2)
-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의회 직원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임면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수정안 제 117조)

3. 건 의 안 : ‘붙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8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대전제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2조 제2항에 “시·도의회 의장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하여는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조건으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까지 반드시 확대·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인사관리의 효율성 문제는 시·도 단위의 인사운영협의회를 두고, 인사운영협의회 구성에 해당 시·도 관내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포함하게 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민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2019. 9. 9.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2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생 략) ② <u>시·도의회 의장은 시·도의 회</u>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u>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군 및 자치구의 회 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u> 1. <u>별정직공무원</u>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u>임기제공무원</u> 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u> <신 설>	제102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방의회의 의장은</u> ----- ----- ----- ----- ----- ----- <삭 제>
	제102조의2(인사운영협의회 등) ① <u>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u>

제117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시·도의회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회는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시·도의회 단위로 인사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시·도의회 의장과 해당 시·도 관내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장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인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지방의회-----

-----.